

 신안산대학교	미디어센터 규정	규정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책임부서/팀·계	3-1-30 2024.8.19. 입학학생처
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신안산대학교 학칙」 제58조에 따라 설치하는 신안산대학교 미디어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신안산대학교 미디어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
- 신문 운영에 관한 사항
- SNS 운영에 관한 사항
- 30주년 기념에 관한 사항
-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홍보

제2장 조직

제3조(센터장 및 부센터장)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두되,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 등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③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. 부센터장은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속직원 등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센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장, 부국장, 총무, 정국원, 수습국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국장 1인을 두되, 본교 학생 중에서 별도의 전형을 거쳐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총무 1인을 두되, 본교 학생 중에서 별도의 전형을 거쳐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국원은 10명 이내로 하되, 본 대학의 재학생으로 소정의 전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휴학을 한 국원은 휴학원 제출일로부터 국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복학 시에는 명예국원이 된다.
- ⑤ 부장은 제6조에 따라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 국원 중 별도의 전형을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전문위원) ① 센터에는 각종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전문위원은 대학 내·외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③ 전문위원은 기술자문, 학생지도 등을 통해 센터장을 보좌하고 미디어 콘텐츠사업 및 교육업무를 수행한다.
- ④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운영

- 제6조(업무분담)** ① 센터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.
② 국장은 국원과 수습국원을 관리하고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보좌한다.
③ 총무는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 및 회계를 담당한다.
④ 필요 시 부장을 선발하여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국원의 자격) 수습국원 중 2, 3학년 등록을 필한 재학생 중 소정의 전형을 거쳐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수습국원의 자격) 수습국원은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1, 2학년 재학생 중에서 센터장이 행하는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.

제4장 재정

제9조(재정)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대학 지원비
2. 본 대학 학생 자율적 경비
3. 기타 수익금

제10조(예산 편성 및 결산) 예산편성 및 결산은 학기별로 구분하여 연 2회로 하고 센터장, 국장, 총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11조(예산 집행) 예산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국장과 총무의 협의 하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.

제5장 기타

제12조(운영 세칙)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